

언론보도와 사자의 명예훼손

손 동 권 / 경찰대 법학과 교수

I. 서

한국언론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공화국 이전의 한국언론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은 피해자의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과정과 더불어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 한국언론은 차츰 개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로서도 등장하였다. 특히 오락성 신문 내지 잡지가 대량판매를 위하여 취재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례는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례도 종종 등장하였다. 예컨대 1981년에 일어났던 윤경화 노파의 의문의 피살과 여대생 박상은 양의 피살사건의 무분별한 보도, 1982년에 전해린 평전이 『천재의 불꽃놀이』라는 제하로 여성동아 동년 4월, 5월, 6월호에 연재된 것 등에서 사자명예훼손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잡지 웅진여성(폐간) 1991년 12월호에, 에이즈에 걸린 한 여자가 수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복수극을 벌였다는 기사가 발표되고 거기에 유명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실림으로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웃 일본에서도 사진주간지 「포커스」의 발행사인 신조사와 동 「플래시」 발행사인 광문사가 최초의 에이즈 환자로 인정되어 1987년 1월 20일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허위의 매춘기사와 함께 게재함으로써 부모가 딸의 초상권, 딸과 부모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1)

이러한 언론보도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의 사례가 오늘날 증가함에 비추어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아래에서는 먼저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약간의 일반적 고찰을 한 후, 사자명예훼손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헌법적 법익의 충돌

(1) 헌법적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우리 헌법은 제 21 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의 최고결정자이고, 따라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최후적 정당성은 국민의 정치적 동의(Konsens)에서 나온다.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동의(Konsens)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평가의 척도라고 인식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표현을 할 수 있는 주권적 공권의 성격과 함께, 의사표현과 여론형성 그리고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고 동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 권리) 및 보도의 자유로 구성된다. 그 중 보도의 자유는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한 의사표현 또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한 전달이 갖는 정보효과와 그것이 여론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 때문에 보도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2) 명예권의 헌법적 보장

우리 헌법은 개인의 명예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근거규정은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 10 조에서 찾을 수 있다. 명예권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권 등과 더불어 인격권의 일내용을 이루고, 이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본조는 주로 개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개인의 명예를 특별히 언론에 대하여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헌법 제 21 조 4 항은 「언론, 출판은 개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조항 전단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넘어서 수 없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이와 같은 특별한 제한규정을 둔 것은 우리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자칫 동화적 통합의 분위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헌법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둘째, 본조항의 단서는 기본권의 제 3 자적 효력 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인정을 명시한 규정이다.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 조항이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을 명시하여 거대한 힘을 가진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약한 개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신을 헌법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법익충돌의 조화

(1) 헌법적 법익충돌의 해결을 위한 원칙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의 일반적 의미는 국가는 가능한 한 그것을 최대한으로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적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헌법적 법익이 충돌할 때 국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원칙이 있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 희생 하에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선택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양법익은 동일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가능한 한 모두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대상이지 다른 것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법익의 충돌을 민주적으로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그것은 양법익의 상호제한을 통하여 서로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보장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독일에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이론으로서, 유명한 헌법학자 Hesse 에 의하여 개발되어 오늘날 통설화되어 있는 사고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 헌법 제 21 조 제 4 항도 언론에 의한 모든 명예훼손적 보도가 항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어떠한 명예훼손적 보도도 금지된다면 이는 국가 사회 개인의 비리 내지 범죄가 공적으로 비판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부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이유로 언론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조화를 위한 구체적 준거규범으로서의 형법 310 조의 규정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충돌되는 헌법적 법익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원칙론을 위에서 적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익충돌을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우리 형법 제 310 조가 중요한 하나의 준거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법은 한편으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제 307 조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법은 제 310 조에서 (제 307 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본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형법 제 310 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의 보도이고 공익성이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의 일반의 이익을 말한다. 즉 그 사실을 공중에게 알리고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공중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의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소송법상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본조가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가해자)에게 지운 거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 310 조는 명예훼손죄로부터 면책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또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조화한 일반적 준거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에도 이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당해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적시사실이 진실인 것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 때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III. 언론보도와 사자명예훼손의 구체적 검토

1. 명예의 주체로서의 사자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나 정신병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자기가 스스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명예감정」이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는 내재적 가치인 「내적 명예」는 법적 의미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한편의 견해에 의하면,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사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존재와 활동의 전제가 되는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이라고 한다.3) 서론에서 적시한 일본의 에이즈보도 소송에 대하여 일본 대판지방법원도 「인격권은 사람의 사망에 의해 소멸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부모의 인격권의 일부가 되는 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라고만 판시했다. 또한 전통적인 영미관습법에 의하면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라, 물려줄 수 없는 인격권이므로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소송 도중 사망했다면 그 소송은 유족에게 수계되지 않고 사망과 동시에 중지된다고 한다.4) 미국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명예훼손소송의 수계에 대해서는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사자의 명예훼손소송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은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5) 그 근거는 a)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실정법의 규정이 있으며(형법 제 308 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제 30 조), b)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존경심만을 법이 보호한다면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권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전혀 보호될 수 없고, c)사람은 사망하였을지라도 그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도 독일 기본법 제 1 조 1 항에 의한 인격권의 법률적인 보호는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가치 및 존경청구권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어서 특히 사망한 사람의 계속적인 인생상은 적어도 심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6) 생각컨대, 우리 형법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규정과는 별도로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자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통설이 타당하다. 다만, 명예권 자체의 주체는 사자이나 그 권리의 행사주체는 보통 유족이 될 뿐이다.

2. 사자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문제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써 처벌한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범만이 형법적으로 처벌되고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고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로 보도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드물게 나타난다. 고의행위인 경우에도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형법 제 15 조 1 항에 의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사자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결여 때문에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친고죄이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형사소송법 제 277 조). 이러한 공소권자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 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동법 제 228 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아예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제 310 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없다. 따라서 거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검사가 범죄성립의 요소인 허위사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종국적으로 거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는 결과이다.

3. 사자명예훼손에 관한 민사문제

우리 민법 제 751 조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고의에 한하여 성립되는 데 반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과실행위로도 족하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고의로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도하였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잡지는 신문에 비해 신속성의 요청이 적으므로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다. 따라서 잡지 발행인이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대량판매를 위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행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이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이 경우 고의행위에 있어서 거증책임이 가해자에게 부담되는 것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임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 과실에 의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역시 가해자가 그 면책의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의없는 가해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과실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사자의 명예도 불법행위책임법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명예회복처분에 의해 복원됨이 필요하며, 또한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과의 균형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자는 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는 상속인이나 근친자에 의해서 행사된다. 문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a) 형벌귀속의 객체인 형법상 범죄행위와 손해배상귀속의 객체인 민법상 불법행위는 구별하여야 하므로 사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된다는 생각과 (b) 형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민법이 금지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을 해치기 때문에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한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진실한 사실의 보도에 의한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언론에 의한 흥미위주의 사자명예훼손은 동시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유족은 자기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살아있고 또한 침해법익이 「프라이버시」이므로 가해자는 진실한 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면책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b)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허위사실의 유무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나 진실이냐의 구별없이 일응 불법행위가 성립되나,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실한 사실의 적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 764 조).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온 방법은 사죄광고의 게재이다. 사죄광고의 강요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 밖에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청구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사전억제인 방해예방청구권 및 이미 발생하여 계속중인 침해행위의 정지 제거인 방해정지배제청구권(이를 합하여 금지청구권이라 부른다)을 민법 제 389 조 3 항, 민사소송법 제 692 조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금지청구권을, 서론에서 언급한 1982년 여성동아가 연재하였던 전해린 평전사건에서 유족이 언론중재를 통하여(따라서 민사소송의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 연재를 중지시킴으로써 실현한 바 있다.7) 금지청구권에 대한 더 나아간 것은 다른 곳에서 연구가 있었으므로 8) 여기서는 생략한다.

4. 기타의 구제책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상기의 민·형사적 구제제도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 권리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사실의 증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언론에 의한 피해는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 하게 확산되므로 그러한 피해를 즉시에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구 언론기본법에 이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반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박권은 문제된 공격기사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관계 없이 부여되므로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한다.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정기간행물법제 17 조), 이 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 19 조). 정정보도청구권의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간 「언론중재」에 여러번 상세히 연구발표 되어 있으므로 9)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IV. 맺는 말

상기의 글은 주로 언론에 의한 사자명예침해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의한 구제제도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의 분쟁해결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이 앞으로 더욱 더 생활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주

- 1) 「언론중재」, 1990년 봄호, 77면
-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518면
- 3) 권오승,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 「언론중재」, 1983년 가을호, 7면.
- 4) 이에 대하여는 염규호,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수계", 「언론중재」 1990년 겨울호, 44면 이하에서 참조.
- 5) 이재상, 「형법각론」, 179면 :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I」, 233면 : 김종원, 「형법각론(상)」, 161면 : 이은영, 「채권각론」, 740면.
- 6) BGHZ 50, 135(139).
- 7)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사례집」, 제 1집(1981~1982), 106면 이하 참조.
- 8) 김오수,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형태", 「언론중재」, 1983년 봄호, 39면 이하.
- 9)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1년 가을호, 9면 : 동인,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일반적 고찰", 「언론중재」, 1989년 가을호, 51면.

□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대학원 (석사), 독일 Bonn 대학교 (박사)

□ 저술 : 「헌행법에 의한 양심범처벌의 문제성」,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수사서류의 증거 능력」 외

현재 경찰대 법학과 교수